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2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우) 100-74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20층)
T 02-6210-0114(대표) www.k-me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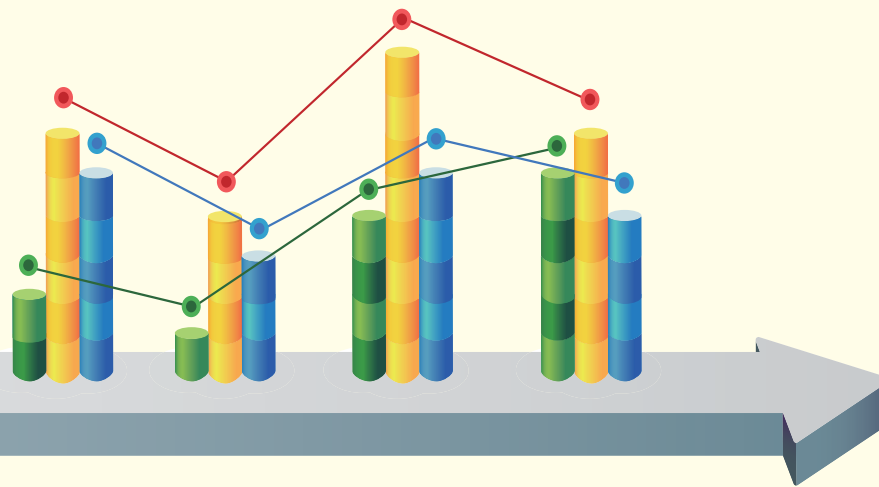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2



발간사



2012. 4.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창립된 이래 2012. 12. 31.까지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첫 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 통계연보는 개원 후 9개월 동안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와 감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우리 원이 출범한 이래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의 이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및 각종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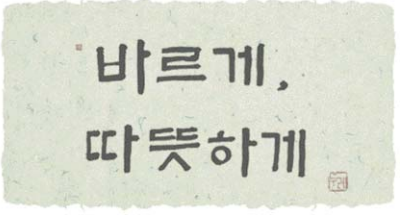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직원은 항상 ‘바르게, 따뜻하게’라는 원훈을 가슴에 품고 업무수행을 하고, 아울러 이 통계연보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통계연보가 나오기까지 통계자료의 수집과 분석·정리에 애쓴 직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추 호 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훈(院訓)



의미

- 바르게 의료사고 감정은 ‘정확하게’
사건 당사자에게는 ‘공정하게’
사건 처리는 ‘신속하게’를 의미합니다.
- 따뜻하게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환자 측과 분쟁에 시달려 몹시 지쳐있는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겨울에도 의료사고
한겨울에도 분쟁해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T.02.6210.01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① 이 통계연보는 2012. 4. 9.부터 12. 31.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요업무에 대한 통계를 수록하였습니다.
- ② 이 통계연보의 자료는 2012. 12. 31.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③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이사항은 하단에 주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④ 통계표의 단위는 우측 상단에 표시하였으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 하였습니다.
- ⑤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군은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 하였습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표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중재원’ 으로 표기
- ⑥ 통계연보에 사용된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
- ⑦ 이 통계연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열린중재원 / 자료실)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⑧ 이 통계연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

(2)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함(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3) 보건의료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로서 보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같은 법률 제2조 제3호).

(4) 조정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

(5) 중재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6) 감정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하여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지식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의료사고 감정단 운영규정 제2조).



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30, 0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혁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11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혁	12
2.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13

II. 주요통계 도표 19

1. 상담현황	20
1-1. 상담 총괄	20
1-2. 상담 처리	21
2. 조정·중재 신청현황	22
2-1. 신청 방법	22
2-2. 월별 신청	22
3. 수탁감정 접수현황	23
4. 당사자별 접수현황	23
4-1. 신청인 분류	23
4-2. 피신청인 분류	24
5. 감정, 조정·중재 처리현황	24
5-1. 감정	24
5-2. 조정·중재	25
6.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	26
6-1. 보건의료기관 종별	26
6-2. 진료과목별	27
6-3. 월별	28
7. 감정, 조정·중재 처리기간별 현황	29
7-1. 감정	29
7-2. 조정·중재	29

8. 조정·중재 금액별 현황	30
8-1. 전체 신청된 사건의 금액	30
8-2. 성립된 사건의 신청금액	30
8-3. 성립금액	31
9. 합의 또는 조정성립 건당 조정·중재 평균금액	31

III. 분야별 통계표 33

1. 상담	34
1 유형 및 내용	34
1-1. 상담 방법별	34
1-2. 상담 내용별	34
2 상담 연령별	35
3 환자 연령별	35
4 상담 신청인과 의료분쟁 당사자와의 관계	35
5 의료유형별	36
6 의료행위별	36
7 진료과목별	37
8 이용자 지역별	38
2. 신청(접수)	39
1 조정·중재 신청방법	39
2 신청인 주체별, 성별, 연령별, 국적별	39
2-1. 신청인 주체별	39
2-2. 신청인 성별	39
2-3. 신청인 연령별	40
2-4. 신청인 국적별	40

3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신청건수	41
3-1.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신청건수	41
3-2. 의료분쟁 관련 지역별 신청건수	42
3-3.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신청건수	43
4 신청인과 환자와의 관계	44
5 조정·중재 신청건수 및 금액 현황	44
5-1. 조정·중재 신청건수 및 금액	44
5-2. 조정·중재 월별 신청건수	45
6 신청(접수) 내용	45
6-1. 의료유형별 접수현황	45
6-2. 보건의료기관 종별 접수현황	46
6-3. 진료과목별 접수현황	47
6-4. 의료행위별(의과)	48
6-5. 의료행위별(치과)	48
6-6. 의료행위별(한의학)	48
6-7. 의료행위별(약학)	48
6-8. 신청시 당사자(환자) 상태	49
3. 사건확인(검토)	50
1 신청취지	50
2 보건의료기관 종별 각하사유 현황	50
3 조정 피신청인 참여·불참여 현황	51
3-1. 월별 피신청인 참여현황	51
3-2. 진료과목별 피신청인 참여현황	51
3-3. 보건의료기관 종별 피신청인 참여율	52
3-4. 진료과목별 피신청인 불참여사유	52

3-5. 보건의료기관 종별 피신청인 불참여사유	53
3-6. 조정참여 결정 평균 소요기간	53
4. 의료사고 감정	54
1 의료사고 감정처리 현황	54
1-1. 의료사고 감정 총괄	54
1-2. 의료사고 감정처리 기간	54
2 세부 내역별 감정처리 현황	55
2-1. 진료과목별 감정처리	55
2-2. 의료행위별 감정처리(의과, 치과, 한의과, 약학)	56
2-3. 의료기관 종별 감정처리	57
3 세부 유형별 의료사고 내용	57
3-1. 진료과목별	57
3-2. 환자 연령별	59
4 수탁감정 의뢰기관별 처리현황	59
5. 조정·중재	60
1 조정사건 처리현황	60
2 사건 처리건수, 합의/결정금액, 처리기간	60
3 감정서 송부 이후 종결까지 소요기간	61
4 합의조정 및 조정 성립금액	61
5 조정성립률 현황	62
5-1. 보건의료기관 종별	62
5-2. 진료과목별	63
5-3. 지역별	64



부 록

65

- 1. 의료기관 종류별 정의 66
-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안내 69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의료사고 예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함께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혁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혁
- 2.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혁

일 자	내 용
'88. 10	대한의사협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
'94. 11	정부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 최초 제출
'11. 3.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11. 4.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법률 제10566호)
'11. 5. 3.	의료중재원 설립추진단, 설립준비위원회 출범
'11. 12. 31.	의료중재원 조직 및 예산확정
'12. 1. 9.	서울시티타워 사무공간 확보
'12. 2. 2.	- 감정위원 추천위원회(위원장: 구옥서) 구성 - 조정위원 인선위원회(위원장: 유영학) 구성
'12. 3. 7.	의료중재원 초대 원장(추호경) 내정
'12. 3. 22.	- 의료중재원 발기인 총회 개최 - 의료중재원 원장 및 이사 등 임원 선임
'12. 3. 27.	법인 설립 허가신청
'12. 3. 29.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의료사고감정단 단장, 감사 내정
'12. 4. 5.	의료중재원 법인설립인가(보건복지부 장관)
'12. 4. 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공포
'12. 4. 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2. 4. 9.	- 법인설립등기 - 의료중재원 출범 - 이사회 구성

2.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가. 추진배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88.10월부터 추진되었으며, '94. 11월 이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지만,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 특례 등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였다.

제18대 국회에 이르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의 취지 설명 등을 통해 반대의견 완화 및 국회, 관련단체 등의 동향에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88년 이후 23년만인 '11. 3. 11.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고, 1년 후인 '12.4.8.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제14대)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미의결
- (제15대)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법무부 반대 및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제16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관계부처 반대로 추진 중단
- (제17대)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
- (제18대) '09년 5~7월 최영희 의원, 심재철 의원 법안 제출, 박은수 의원 청원 소개와 복지위원회 대안제출 및 제298회 국회 본회의 통과('11. 3. 11.) · 공포('11. 4. 7.)

나. 주요내용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설립목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
- (업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의료사고 예방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 (구성)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사무국

지금까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없었고, 기존 조정절차와는 차별화된 기능이 추가된 조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독립기구인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였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중재원이라는 단일 기관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각각 독립적으로 둬서 감정의 객관성과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사무국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두었다.

의료사고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5명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감정부를 두어 감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

가) 조정·중재 신청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 중 일방(환자 또는 의료인)은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또는 의료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나머지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된다.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의료중재원에 중재신청도 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한다. 그 후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다)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원장으로부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 의료분쟁조정위원장은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의료사고감정단장은 관할 감정부를 지정한다.

라) 감정부의 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해야 하며, 60일의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 총 90일).

마) 조정부의 조정결정

조정부는 감정부의 감정서를 참고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90일의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 총 120일).

조정부는 조정결정 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바) 조정결과의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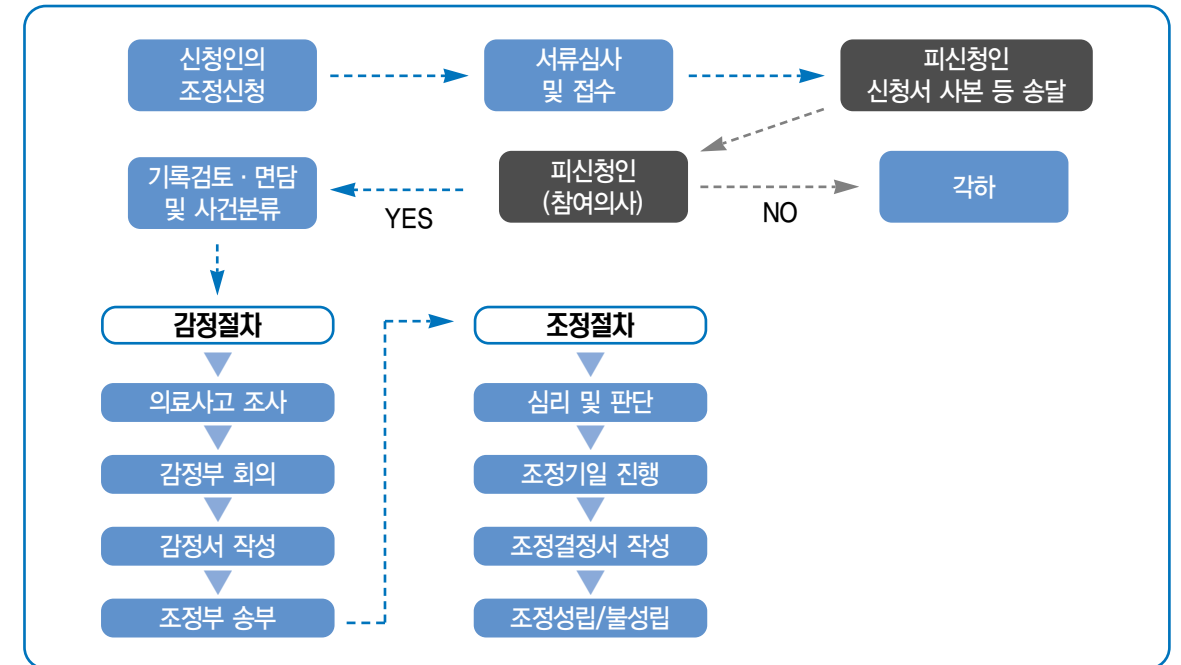
원장은 조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정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조정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료중재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결정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사) 성립된 조정 및 중재판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그림〉 업무흐름도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분쟁 조정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측의 지급 곤란 등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불제도는 환자가 의료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요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의료인이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하여 환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재원은 국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며,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미, 분만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중 2명,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는 국가, 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책무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확보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 준수,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6) 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의료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7)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 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중과실치상죄(국민의 법 감정 고려) 및 중상해(현재의 결정 고려)는 제외하였다.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하였다.

8) 기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이 한국의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통계 지표

1. 상담현황
2. 조정·중재 신청현황
3. 수탁감정 접수현황
4. 당사자별 접수현황
5. 감정, 조정·중재 처리현황
6.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
7. 감정, 조정·중재 처리기간별 현황
8. 조정·중재 금액별 현황
9. 합의 또는 조정성립 건당 조정·중재 평균금액

1. 상담현황

1-1. 상담 총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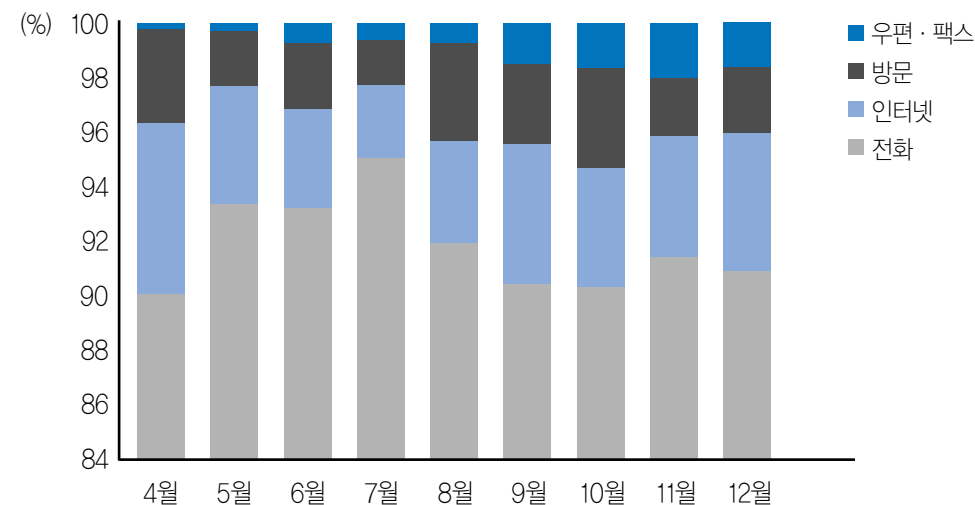
구분	계 ¹⁾	상담방법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팩스
계 (일평균) ²⁾	26,831(147.4)	24,754	1,111	692	274
4월 ³⁾	1,821(121.4)	1,640	113	64	4
5월	3,411(162.4)	3,183	149	68	11
6월	3,028(151.4)	2,823	110	73	22
7월	5,104(232.0)	4,853	134	84	33
8월	2,916(132.5)	2,681	109	102	24
9월	2,530(126.5)	2,287	129	76	38
10월	2,883(137.3)	2,604	124	107	48
11월	2,806(127.5)	2,563	126	60	57
12월	2,332(122.7)	2,120	117	58	37

1) 중복상담이 포함되어 있음.

2) 일평균은 '계÷상담일' 기준임.

3) 의료종재원이 '12.4.9. 개원, 따라서 4월 통계는 4.9.부터 4.30.까지의 실적을 말함(이하 같음).

〈그림〉 2012년도 월별 상담 방법별 현황



1-2. 상담 처리

(단위: 건)

구분	계	일반상담 ¹⁾			전문상담 ²⁾				
		소계	응대콜 ³⁾	아웃콜 ⁴⁾	소계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팩스
계	26,831	23,499	21,130	2,369	3,332	1,255	1,111	692	274
4월	1,821	1,556	1,458	98	265	84	113	64	4
5월	3,411	3,041	2,700	341	370	142	149	68	11
6월	3,028	2,710	2,461	249	318	113	110	73	22
7월	5,104	4,694	4,359	335	410	159	134	84	33
8월	2,916	2,515	2,247	268	401	166	109	102	24
9월	2,530	2,155	1,952	203	375	132	129	76	38
10월	2,883	2,461	2,158	303	422	143	124	107	48
11월	2,806	2,391	2,090	301	415	172	126	60	57
12월	2,332	1,976	1,705	271	356	144	117	5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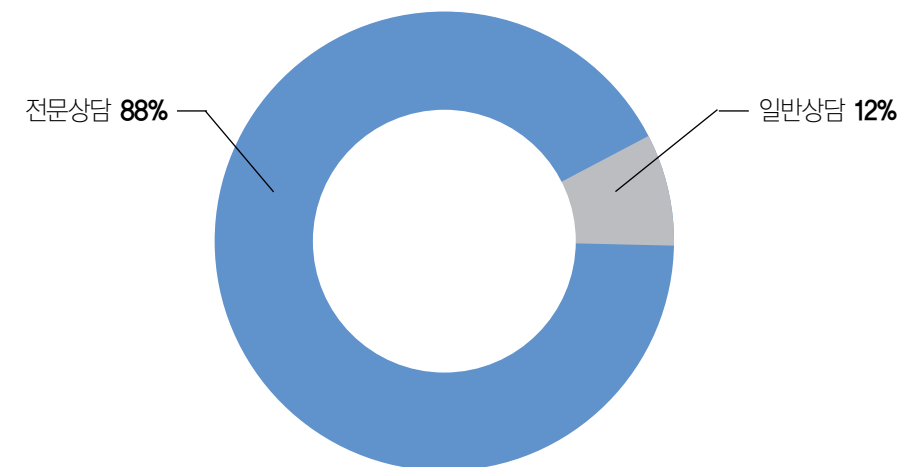
1) 일반상담이라 함은 도급용역계약에 의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1차적인 인바운드(고객 예게서 걸려 온 전화) 전화상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것) 전화상담, 콜백 및 CS 확인콜(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고, 확인하는 것) 등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상담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

2) 전문상담이라 함은 접수상담부서에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인터넷상담 등을 전담하는 의료종재원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전문상담원은 일반상담원이 처리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내용의 상담과 불안고객 및 난이도 높은 업무의 전화상담, 일반상담원이 받지 못해 발생하는 전화 상담 및 본부 대표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상담품질관리를 위한 콜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고객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함 (상담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

3) 응대콜이라 함은 상담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상담을 진행한 전화를 말함.

4) 아웃콜이라 함은 상담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제8호의 '아웃바운드(Out-bound)' 및 제11호의 '콜백(Call-back)' 을 합친 개념으로, 고객이 상담센터에 연결을 시도하였음에도 연결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료종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거는 전화를 말함.

〈그림〉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비율



2. 조정 · 중재 신청현황

2-1. 신청 방법

(단위: 건, %)

구분	계	우편	방문	인터넷	팩스
계	503	227	186	76	14
조정	502	227	186	75	14
중재	1	—	—	1	—
비율	100.0	45.1	37.0	15.1	2.8

2-2. 월별 신청

(단위: 건)

구분	월	신청건수
조정	계	503
	소계	502
	4월	5
	5월	26
	6월	38
	7월	58
	8월	59
	9월	69
	10월	87
	11월	85
	12월	75
중재	소계	1
	9월	1

3. 수탁감정¹⁾ 접수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건수
계	6
법 원	1
검 찰	—
경 찰 서	5
공공기관	—

1) 수탁감정이라 함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을 말함 (수탁감정 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수탁감정의 대상은 법 시행일인 '12.4.8.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것에 한한다(같은 지침 부칙 제2조).

4. 당사자별 접수현황

4-1. 신청인 분류

(단위: 건)

구 분			접수건수
계			503
조정	소계		502
	일반인	일반인 계	497
		내국인 ¹⁾	489
		재외국민 ²⁾	2
		외국인 ³⁾	6
	보건의료기관 ⁴⁾		5
중재	일반인	소계	1
		내국인	1

1)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함.

2)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함.

3)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함.

4) 보건의료기관이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말함. 각 보건의료기관의 정의는 <부록>의 용어 정의 참조

4-2. 피신청인 분류

(단위: 건)

구 분		접수건수
계		503
조정	소 계	502
	일 반 인	5
	보건의료기관 계	497
	상급종합병원	104
	종합병원	133
	병 원	90
	치과병원	4
	한방병원	8
	요양병원	10
	의 원	96
	치과의원	42
	한 의 원	9
	기 타 ¹⁾	1
중재	소 계	1
	종합병원	1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5. 감정, 조정 · 중재 처리현황

5-1. 감정

(단위: 건, %)

구 분	사건절차 개시 ¹⁾	처리 ²⁾	비율
계	197	188	100.0
조 정 감 정	191	182	96.8
중 재 감 정	1	1	0.5
수 탁감정 ³⁾	5	5	2.7

1) 신청된 사건 중에서 피신청인이 조정 · 중재절차에 참여 동의한 건

2) 감정서 송부일 기준

3) 수수료를 예납하여 실제 감정절차에 들어간 건수

5-2. 조정 ·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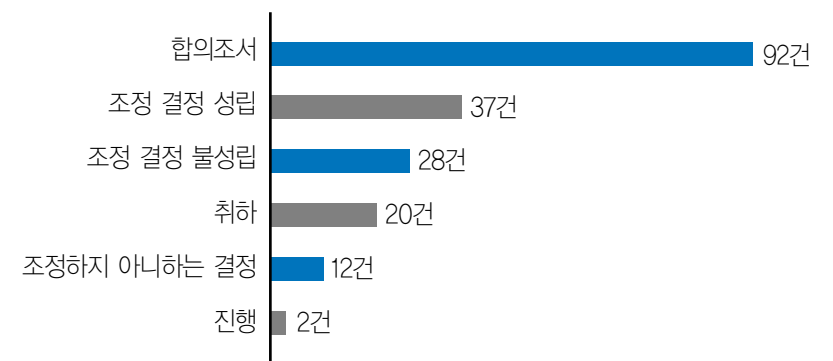
(단위: 건)

구 분	계	조정 · 중재 절차 불개시			조정 · 중재 절차개시											참 여 미 확 정 ²⁾
		소 계	각 하 (불참)	취 하 (신청)	소 계	중 재 판 정	취 하	각 하	조정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합 의 조 서	조정결정			진행		
											조정결정 소계	성 립	불성립		미확정 ¹⁾	
계	503	311	305	6	192	1	20	－	12	92	65	37	28	－	2	－
조정	502	311	305	6	191	－	20	－	12	92	65	37	28	－	2	－
중재	1	－	－	－	1	1	－	－	－	－	－	－	－	－	－	－

1) 미확정이라 함은 조정결정시 정보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 조정결정시 정보를 송달받은 후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가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참여미확정이라 함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참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조정참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함.

〈그림〉 조정신청건 처리결과 현황(건수)



6. 조정 · 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

6-1. 보건의료기관 종별

(단위: 건)

구 분	계	조정 · 중재 절차 불개시			조정 · 중재 절차개시										참 여 미 확 정	
		소 계	각 하 (불참)	취 하 (신청)	소 계	중 재 판 정	취 하	각 하	조정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합 의 조 서	조정결정					진 행
											조정결정 계	성 립	불 성 립	미 확 정		
계	503	311	305	6	192	1	20	－	12	92	65	37	28	－	2	－
상급종합병원	104	79	75	4	25	－	1	－	－	8	16	11	5	－	－	－
종합병원	134	94	94	－	40	1	5	－	3	16	15	9	6	－	－	－
병 원	92	47	46	1	45	－	4	－	－	23	17	9	8	－	1	－
치과병원	4	－	－	－	4	－	1	－	－	2	1	－	1	－	－	－
한방병원	9	4	4	－	5	－	2	－	－	2	1	1	－	－	－	－
요양병원	10	5	5	－	5	－	1	－	－	3	1	－	1	－	－	－
의 원	96	58	57	1	38	－	4	－	4	20	9	6	3	－	1	－
치과의원	44	19	19	－	25	－	1	－	5	15	4	－	4	－	－	－
한 의 원	9	5	5	－	4	－	1	－	－	2	1	1	－	－	－	－
약 국	1	－	－	－	1	－	－	－	－	1	－	－	－	－	－	－
기 타 ¹⁾	－	－	－	－	－	－	－	－	－	－	－	－	－	－	－	－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2. 진료과목별¹⁾

(단위: 건)

구 분	계	조정 · 중재 절차 불개시			조정 · 중재 절차개시											참 여 미 확 정
		소 계	각 하 (불참)	취 하 (신청)	소 계	중 재 판 정	취 하	각 하	조정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합 의 조 서	조정결정				진 행	
											조정결정 계	성 립	불성립	미확정		
계	503	311	305	6	192	1	20	－	12	92	65	37	28	－	2	－
내 과	107	66	65	1	41	－	5	－	－	16	20	12	8	－	－	－
신 경 과	3	1	1	－	2	－	1	－	－	1	－	－	－	－	－	－
정신건강의학과	4	2	2	－	2	－	1	－	－	1	－	－	－	－	－	－
외 과	43	31	30	1	12	－	－	－	1	4	7	7	－	－	－	－
정형외과	85	57	57	－	28	－	4	－	2	9	13	9	4	－	－	－
신경외과	33	21	20	1	12	－	1	－	1	4	6	2	4	－	－	－
흉부외과	12	11	11	－	1	－	－	－	－	－	1	1	－	－	－	－
성형외과	18	9	9	－	9	－	1	－	－	5	3	－	3	－	－	－
마취통증의학과	7	4	4	－	3	－	－	－	－	1	2	1	1	－	－	－
산부인과	36	23	22	1	13	－	2	－	－	10	－	－	－	－	1	－
소아청소년과	14	9	9	－	5	－	－	－	1	4	－	－	－	－	－	－
안 과	8	6	6	－	2	－	－	－	－	2	－	－	－	－	－	－
이비인후과	11	10	10	－	1	－	－	－	－	－	－	－	－	－	1	－
피 부 과	7	4	4	－	3	－	－	－	1	2	－	－	－	－	－	－
비뇨기과	7	6	6	－	1	－	－	－	－	－	1	1	－	－	－	－
영상의학과	3	2	2	－	1	－	－	－	－	1	－	－	－	－	－	－
재활의학과	－	－	－	－	－	－	－	－	－	－	－	－	－	－	－	－
가정의학과	3	1	1	－	2	－	－	－	－	2	－	－	－	－	－	－
응급의학과	27	17	15	2	10	1	－	－	1	4	4	2	2	－	－	－
치 과	48	19	19	－	29	－	2	－	5	17	5	－	5	－	－	－
한 방 과	18	10	10	－	8	－	3	－	－	3	2	2	－	－	－	－

구분	계	조정·중재 절차 불개시		조정·중재 절차개시										진행	참여 미확정
		소계	각하 (불참)	취하 (신청)	소계	중재판정	취하	각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합의 조서	조정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미확정	
약제과	2	1	1	-	1	-	-	-	-	1	-	-	-	-	-
기타 ²⁾	6	1	1	-	5	-	-	-	-	4	1	-	1	-	-

-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6-3. 월별

(단위: 건)

구분	계	조정·중재 절차 불개시		조정·중재 절차개시										진행	참여 미확정
		소계	각하 (불참)	취하 (신청)	소계	중재판정	취하	각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합의 조서	조정결정 소계	성립	불성립	미확정	
계	503	311	305	6	192	1	20	-	12	92	65	37	28	-	2
4월	5	3	3	-	2	-	1	-	-	-	1	-	1	-	-
5월	26	16	16	-	10	-	-	-	2	2	6	4	2	-	-
6월	38	19	18	1	19	-	1	-	-	9	8	6	2	-	1
7월	58	34	34	-	24	-	1	-	1	4	18	12	6	-	-
8월	59	38	36	2	21	-	2	-	1	8	10	5	5	-	-
9월	70	48	47	1	22	1	2	-	3	11	4	2	2	-	1
10월	87	55	53	2	32	-	5	-	4	18	5	2	3	-	-
11월	85	47	47	-	38	-	3	-	1	25	9	4	5	-	-
12월	75	51	51	-	24	-	5	-	-	15	4	2	2	-	-

7. 감정, 조정·중재 처리기간별 현황

7-1. 감정¹⁾

(단위: 건, 일, %)

구분	계	평균처리기간	30일 이내	31일~60일	61일~90일	90일 초과
계	183	52.9	5	165	13	-
조정	182		5	165	12	-
중재	1		-	-	1	-
비율	100.0	-	2.7	90.2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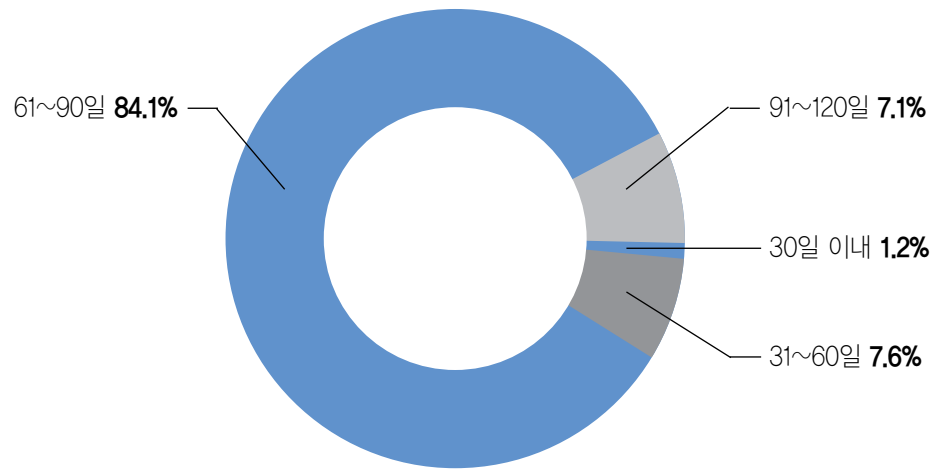
1) 수탁감정 제외

7-2. 조정·중재

(단위: 건, 일, %)

구분	계	평균처리기간	30일 이내	31일~60일	61일~90일	91일~120일	120일 초과
계	170	78.8	2	13	143	12	-
조정	169		2	13	143	11	-
중재	1		-	-	-	1	-
비율	100.0	-	1.2	7.6	84.1	7.1	-

〈그림〉 조정·중재 처리기간별 비율



8. 조정 · 중재 금액별 현황

8-1. 전체 신청된 사건의 금액

(단위: 건, 원, %)

구 분		건수	신청총액	비율
조정	계	502	21,619,164,393	100.0
	50만원 미만	7	1,747,600	1.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	7,215,600	2.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8	255,152,819	19.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4	557,798,570	18.7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61	714,178,234	12.2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2	881,899,000	8.4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4	1,351,531,490	8.8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9	369,061,700	1.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9	4,102,179,380	13.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	7,490,400,000	10.0
	3억원 이상	16	5,888,000,000	3.2
중재	계	1	47,265,000	100.0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	47,265,000	100.0

○ 평균 금액: 43,066,065원

8-2. 성립된 사건의 신청금액

(단위: 건, 원, %)

구 분		건수	신청총액	비율
조정	계	129	4,933,303,020	100.0
	50만원 미만	2	412,460	1.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	1,798,600	1.5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5	57,156,880	19.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2	183,597,000	24.8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8	203,000,000	14.0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	164,300,000	6.2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2	370,000,000	9.3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	80,000,000	1.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	898,038,080	10.9

구 분		건수	신청총액	비율
조정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	1,400,000,000	7.8
	3억원 이상	4	1,575,000,000	3.1
중재	계	1	47,265,000	100.0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	47,265,000	100.0

○ 평균 금액: 38,242,659원

8-3. 성립금액

(단위: 건, 원, %)

구 분		건수	성립금액 ¹⁾	비율
조정	계	129	990,465,428	100.0
	50만원 미만	15	2,350,000	11.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9	12,000,000	14.7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8	123,636,588	45.0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	31,011,210	3.9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6	223,000,000	12.4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9	213,837,940	7.0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2	70,000,000	1.6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	314,629,690	3.9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	—
	3억원 이상	—	—	—
중재	계	1	7,000,000	100.0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	7,000,000	100.0

1) 성립금액: 보건의료기관측에서 환자측에 지급하는 금액 외에 환자측이 면제받거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된 치료비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평균 금액: 7,678,027원

9. 합의 또는 조정성립 건당 조정 · 중재 평균금액

(단위: 건, 원)

구분	처리건수	합의금액/조정결정금액	건당 평균금액
조정	129	990,465,428	7,678,027
중재	1	7,000,000	7,000,000



의료사고 감정은 ‘정확하게’
 사건 당사자에게는 ‘공정하게’
 사건 처리는 ‘신속하게’



분야별 통계

1. 상담
2. 신청 (접수)
3. 사건확인 (검토)
4. 의료사고 감정
5. 조정 · 중재



1. 상담

1 유형 및 내용

1-1. 상담 방법별

(단위: 건, %)

구분	계	전화	인터넷	방문	우편·팩스	기타
계 (비율)	19,501 (100.0)	17,012 (87.2)	995 (5.1)	542 (2.8)	124 (0.6)	828 (4.3)

1-2. 상담 내용별¹⁾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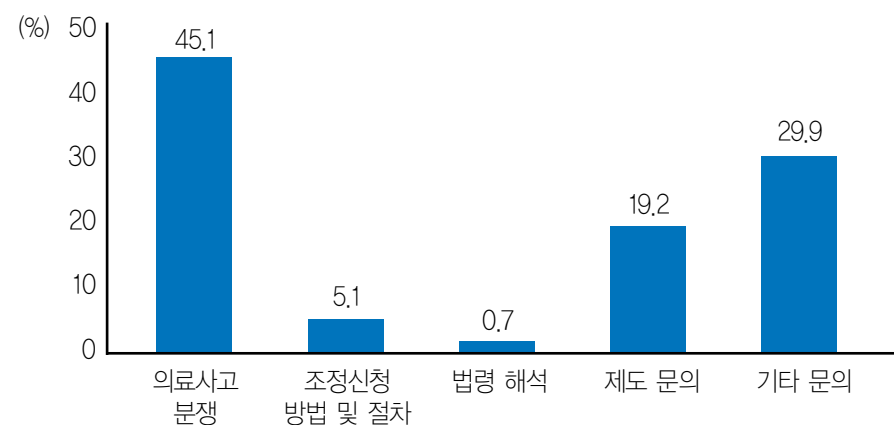
구분	상담건수	비율
계	19,501	100.0
의료사고 분쟁	8,799	45.1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987	5.1
법령 해석	141	0.7
제도 문의 ²⁾	3,746	19.2
기타 문의 ³⁾	5,828	29.9

1) 총 상담 26,831건 중 상담이용자 19,501건 분석, 이 중에서 의료분쟁 상담 8,799건으로 분석

2) 제도 문의: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등 문의

3) 기타 문의: 과잉진료, 진료불성실, 진료비 환불 문제 등 해결방안 문의

〈그림〉 상담내용별 비율 (%)



2 상담 연령별

(단위: 건, %)

구분	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기타(무응답)
건수	8,799	—	5	606	2,232	2,494	2,191	770	315	186
비율	100.0	—	0.1	6.9	25.4	28.3	24.9	8.7	3.6	2.1

3 환자 연령별

(단위: 건, %)

구분	계	10세미만 ¹⁾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기타(무응답)
건수	8,799	301	219	652	1,186	1,376	1,853	1,403	1,566	243
비율	100.0	3.4	2.5	7.4	13.5	15.6	21.1	15.9	17.8	2.8

1) 신생아 129건 포함

4 상담 신청인과 의료분쟁 당사자와의 관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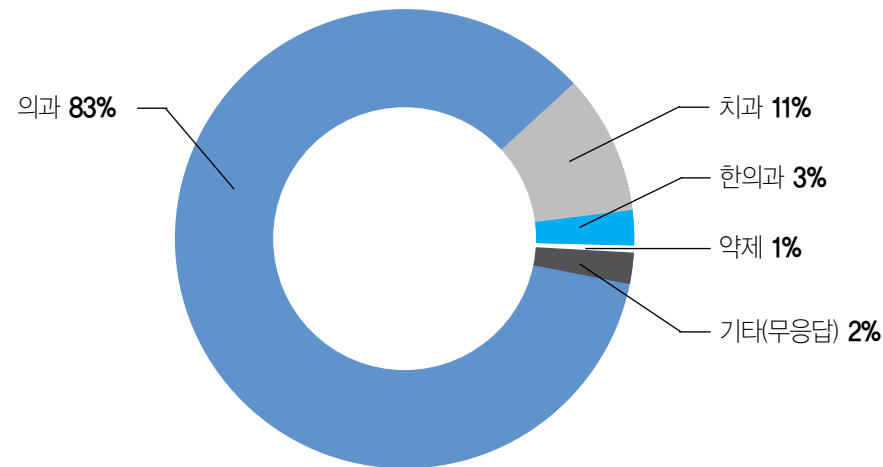
구분	계	본인	가족	친인척	배우자	보건의료기관	기타(무응답)
건수	8,799	3,941	170	776	3,353	82	477
비율	100.0	44.9	1.9	8.8	38.1	0.9	5.4

5 의료유형별

(단위: 건, %)

구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약제	기타(무응답)
건수	8,799	7,312	994	252	47	194
비율	100.0	83.1	11.3	2.9	0.5	2.2

〈그림〉 의료유형별 상담비율



6 의료행위별

(단위: 건, %)

구분	계	수술	처치	진단	주사	검사	투약	환자관리	분만	병원감염	진료불성실	마취	수혈	전원	기타
건수	8,799	3,018	2,636	1,027	503	347	356	291	144	76	23	43	14	2	319
비율	100.0	34.3	30.0	11.7	5.7	3.9	4.0	3.3	1.6	0.9	0.3	0.5	0.2	0.02	3.6

7 진료과목별¹⁾

(단위: 건, %)

구분	상담건수	비율
계	8,799	100.0
내과	1,210	13.8
신경과	55	0.6
정신건강의학과	48	0.5
외과	658	7.5
정형외과	1,756	20.0
신경외과	456	5.2
흉부외과	120	1.4
성형외과	439	5.0
마취통증의학과	54	0.6
산부인과	570	6.5
소아청소년과	104	1.2
안과	270	3.1
이비인후과	183	2.1
피부과	204	2.3
비뇨기과	159	1.8
영상의학과	-	-
재활의학과	56	0.6
가정의학과	36	0.4
치과	1,097	12.5
한방과	272	3.1
약제과	35	0.4
기타 ²⁾	712	8.1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검진센터, 무응답 등

8 이용자 지역별

(단위: 건, %)

구분	상담건수	비율
계	8,799	100.0
서울	3,356	38.1
인천	577	6.6
대전	408	4.6
대구	341	3.9
부산	156	1.8
광주	252	2.9
울산	139	1.6
충북	1,731	19.7
충남	184	2.1
강원	165	1.9
전북	226	2.6
전남	192	2.2
경북	185	2.1
경남	280	3.2
경기	382	4.3
제주	54	0.6
세종	-	-
기타(무응답)	171	1.9

2. 신청(접수)

1 조정 · 중재 신청방법

(단위: 건, %)

구분	계	우편	방문	인터넷	팩스	기타
계	503	227	186	76	14	-
조정	502	227	186	75	14	-
중재	1	-	-	1	-	-
비율	100.0	45.1	37.0	15.1	2.8	-

2 신청인 주체별, 성별, 연령별, 국적별

2-1. 신청인 주체별

(단위: 건, %)

구분	계	일반인	보건의료기관
계	503	498	5
조정	502	497	5
중재	1	1	-
비율	100.0	99.0	1.0

2-2. 신청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계	남성	여성
계	503	300	203
조정	502	299	203
중재	1	1	-
비율	100.0	59.6	40.4

2-3. 신청인 연령별¹⁾

(단위: 건, %)

구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503	—	34	110	146	111	74	24	4
조정	502	—	34	109	146	111	74	24	4
중재	1	—	—	1	—	—	—	—	—
비율	100.0	—	6.8	21.9	29.0	22.0	14.7	4.8	0.8

1) 신청인 연령별 현황은 상담시와 다를 수 있음.

2-4. 신청인 국적별¹⁾

(단위: 건, 원, %)

국가명		신 청	
		건수	비율
계		498 ²⁾	100.0
조정	소계	497	100.0
	내국인 ³⁾	489	98.4
	재외국민 ⁴⁾	2	0.4
	외국인 계	6	1.2
	미국	1	0.2
	중국	3	0.6
	일본	—	—
	러시아	—	—
	몽골	—	—
	캐나다	—	—
	베트남	1	0.2
	필리핀	—	—
	영국	—	—
	사우디아라비아	—	—
	기타 국가	1 ⁶⁾	0.2
중재	소계	1	100.0
	내국인	1	100.0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분석자료' 중 '국적·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 자료 중 상위 10개국 참조

2) 전체 503건 중 보건의료기관 5개 기관 제외

3)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함.

4)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함.

5)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함.

6) 스리랑카

3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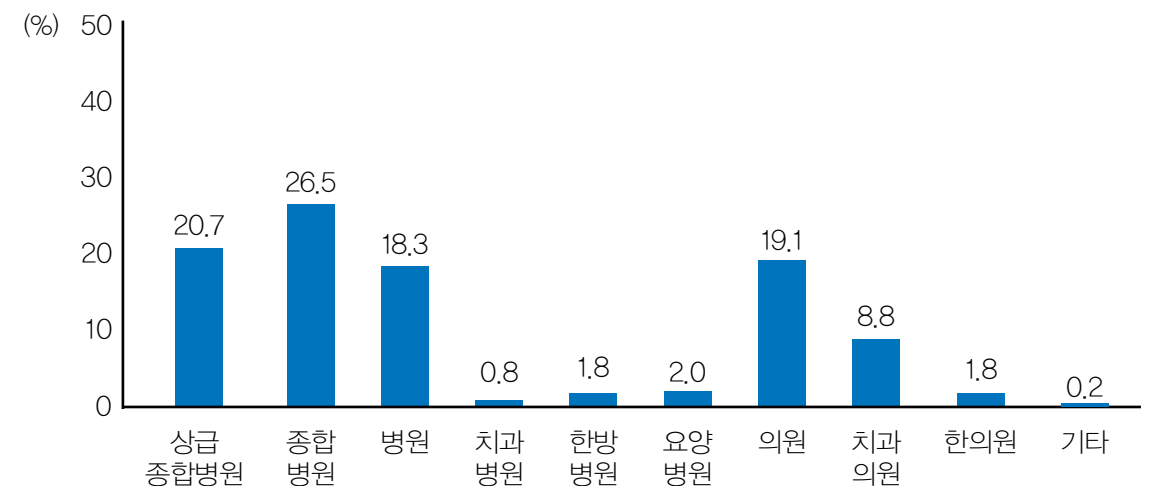
3-1.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신청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청건수	비 율
계	503	100.0
조정	소 계	502
	상급종합병원	104
	종합병원	133
	병 원	92
	치과병원	4
	한방병원	9
	요양병원	10
	의 원	96
	치과의원	44
	한 의 원	9
	기 타 ¹⁾	1
중재	소 계	1
	종합병원	1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그림〉 의료기관 종별 신청(접수) 비율



3-2. 의료분쟁 관련 지역별 신청건수

(단위 : 건, %)

구분		신청건수	비율
계		503	100.0
조정	소계	502	100.0
	서울	146	29.1
	부산	36	7.2
	인천	22	4.4
	대구	16	3.2
	광주	21	4.2
	대전	11	2.2
	울산	3	0.6
	경기	125	24.9
	강원	14	2.8
	충북	20	4.0
	충남	14	2.8
	전북	11	2.2
	전남	8	1.6
	경북	21	4.2
	경남	31	6.2
	제주	3	0.6
	세종	-	-
중재	소계	1	100.0
	경남	1	100.0

3-3. 의료분쟁 관련 보건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신청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타 ¹⁾
계	503	104	134	92	4	9	10	96	44	9	1
조정	소계	502	104	133	92	4	9	96	44	9	1
	서울	146	35	30	27	2	2	1	29	17	3
	부산	36	6	11	9	1	1	-	6	2	-
	인천	22	2	3	7	-	2	-	7	1	-
	대구	16	2	1	8	-	1	1	2	1	-
	광주	21	6	4	4	-	-	2	3	1	1
	대전	11	3	3	3	-	-	1	-	-	1
	울산	3	2	-	-	-	-	-	-	1	-
	경기	125	24	41	17	-	1	1	25	13	2
	강원	14	5	3	1	-	-	1	2	2	-
	충북	20	7	5	2	-	-	2	4	-	-
	충남	14	1	5	3	1	-	-	3	1	-
	전북	11	2	3	-	-	-	-	3	3	-
	전남	8	-	4	2	-	1	-	1	-	-
	경북	21	3	9	4	-	-	1	3	1	-
	경남	31	5	9	5	-	1	-	8	2	1
	제주	3	1	2	-	-	-	-	-	-	-
	세종	-	-	-	-	-	-	-	-	-	-
중재	소계	1	-	1	-	-	-	-	-	-	-
	경남	1	-	1	-	-	-	-	-	-	-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화귀의약품센터

4 신청인과 환자와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계	본인(환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변호사	기타
계	503	252	49	44	126	8	14	3	7
조정	502	251	49	44	126	8	14	3	7
중재	1	1	-	-	-	-	-	-	-
비율	100.0	50.1	9.7	8.7	25.0	1.6	2.8	0.6	1.4

5 조정 · 중재 신청건수 및 금액 현황

5-1. 조정 · 중재 신청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

구분	신청금액	건수	금액	비율
조정	계	503	21,666,429,393	-
	소계	502	21,619,164,393	100.0
	50만원 미만	7	1,747,600	1.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	7,215,600	2.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8	255,152,819	19.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4	557,798,570	18.7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61	714,178,234	12.2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2	881,899,000	8.4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4	1,351,531,490	8.8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9	369,061,700	1.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9	4,102,179,380	13.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	7,490,400,000	10.0
	3억원 이상	16	5,888,000,000	3.2
중재	소계	1	47,265,000	100.0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	47,265,000	100.0

※ 비율은 건수 기준임

5-2. 조정 · 중재 월별 신청건수

(단위: 건, 원)

구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503	5	26	38	58	59	70	87	85	75
조정	502	5	26	38	58	59	69	87	85	75
중재	1	-	-	-	-	-	1	-	-	-

6 신청(접수) 내용

6-1. 의료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약학	기타
계	503	434	48	19	2	-
조정	502	433	48	19	2	-
중재	1	1	-	-	-	-
비율	100.0	86.3	9.6	3.8	0.4	-

〈그림〉 의료유형별 신청(접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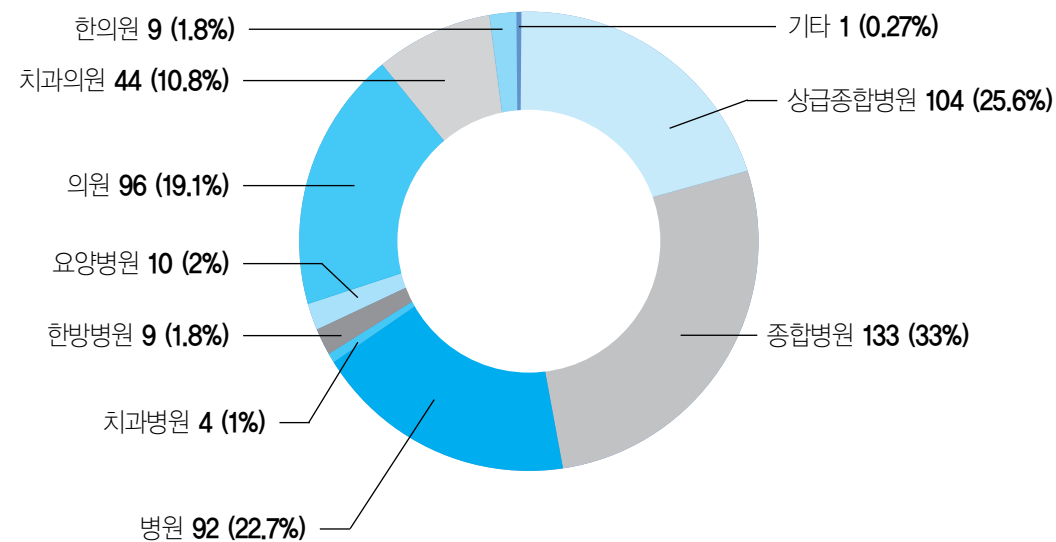
6-2. 보건의료기관 종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청건수
계		503
조정	소 계	502
	상급종합병원	104
	종합병원	133
	병 원	92
	치과병원	4
	한방병원	9
	요양병원	10
	의 원	96
	치과의원	44
	한 의 원	9
	기 타 ¹⁾	1
중재	소 계	1
	종합병원	1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그림〉 의료기관 종별 접수현황



6-3. 진료과목별¹⁾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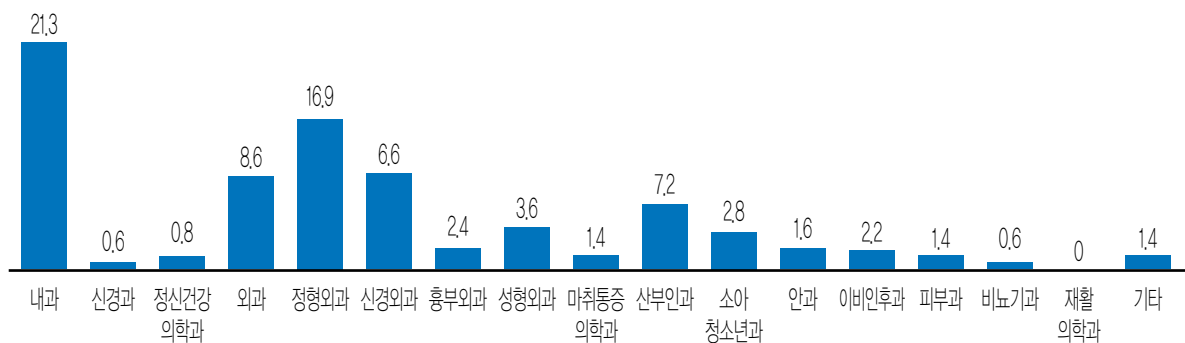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건수	비율
계		503	100.0
조정	소 계	502	100.0
	내 과	107	21.3
	신 경 과	3	0.6
	정신건강의학과	4	0.8
	외 과	43	8.6
	정형외과	85	16.9
	신경외과	33	6.6
	흉부외과	12	2.4
	성형외과	18	3.6
	마취통증의학과	7	1.4
	산부인과	36	7.2
	소아청소년과	14	2.8
	안 과	8	1.6
	이비인후과	11	2.2
	피 부 과	7	1.4
	비뇨기과	7	1.4
	영상의학과	3	0.6
	재활의학과	-	-
	가정의학과	3	0.6
	응급의학과	26	5.2
	치 과	48	9.6
	한 방 과	18	3.6
	약 제 과	2	0.4
	기 타 ²⁾	7	1.4
중재	소 계	1	100.0
	응급의학과	1	100.0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그림〉 진료과목별 접수현황 (비율) (%)



6-4. 의료행위별 (의과)

(단위 : 건, %)

구분	계	전원 ¹⁾	건강검진	내시경	분만	마취	수술	수혈	처치	주사	투약	검사	진단	기타
건수	434	—	9	6	12	—	133	—	97	39	17	3	98	20
비율	100.0	—	2.1	1.4	2.8	—	30.6	—	22.4	9.0	3.9	0.7	22.6	4.6

1) 전원 :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6-5. 의료행위별 (치과)

(단위 : 건, %)

구분	계	보철	임플란트	교정	의치	발치	기타
건수	48	8	3	2	3	16	16
비율	100.0	16.7	6.3	4.1	6.3	33.3	33.3

6-6. 의료행위별 (한의과)

(단위 : 건, %)

구분	계	한약	침	부항	뜸	신 한방치료	물리치료	기타
건수	19	3	7	—	—	—	3	6
비율	100.0	15.8	36.8	—	—	—	15.8	31.6

6-7. 의료행위별 (약학)

(단위 : 건, %)

구분	계	조제	복약지도	기타
건수	2	2	—	—
비율	100.0	100.0	—	—

6-8. 신청시 당사자 (환자) 상태

(단위 : 건, %)

구분	계	사망	완치	장애	치료 중	기타
계	503	127	55	12	255	54
조정	502	127	55	12	254	54
중재	1	—	—	—	1	—
비율	100.0	25.2	10.9	2.4	50.7	10.7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환자 측과
분쟁에 시달려 몹시 지쳐있는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3. 사건확인(검토)

1 신청취지

(단위 : 건, %)

구분	계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사과 요구	기타
계	503	498	5	-	-
조정	502	497	5	-	-
중재	1	1	-	-	-
비율	100.0	99.0	1.0	-	-

2 보건의료기관 종별 각하사유 현황

(단위: 건)

각하사유	보건의료기관	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타 ¹⁾
계		305	75	94	46	-	4	5	57	19	5	-
의료사고 아님이 명백		-	-	-	-	-	-	-	-	-	-	-
이미 소 제기		-	-	-	-	-	-	-	-	-	-	-
이미 소비자원 분쟁신청		-	-	-	-	-	-	-	-	-	-	-
신청인 조사 불응		-	-	-	-	-	-	-	-	-	-	-
신청인 2회 이상 출석 불응		-	-	-	-	-	-	-	-	-	-	-
신청 후 진료 및 업무 방해		-	-	-	-	-	-	-	-	-	-	-
신청 후 소 제기		-	-	-	-	-	-	-	-	-	-	-
피신청인 절차참여의사 부재		305	75	94	46	-	4	5	57	19	5	-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 조정 피신청인 참여·불참여 현황

3-1. 월별 피신청인 참여현황

(단위: 건, %)

월	구분	참여율	조정참여건수	조정신청건수	각하건수
계		38.0	191	502	305
4월		40.0	2	5	3
5월		38.5	10	26	16
6월		50.0	19	38	18
7월		41.4	24	58	34
8월		35.6	21	59	36
9월		30.4	21	69	47
10월		36.8	32	87	53
11월		44.7	38	85	47
12월		32.0	24	75	51

3-2. 진료과목별¹⁾ 피신청인 참여현황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계	191	100.0
내과	41	21.5
신경과	2	1.0
정신건강의학과	2	1.0
외과	12	6.3
정형외과	28	14.7
신경외과	12	6.3
흉부외과	1	0.5
성형외과	9	4.7
마취통증의학과	3	1.6
산부인과	13	6.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구 분	건수	비율
소아청소년과	5	2.6
안 과	2	1.0
이비인후과	1	0.5
피 부 과	3	1.6
비뇨기과	1	0.5
영상의학과	1	0.5
재활의학과	—	—
가정의학과	2	1
응급의학과	9	4.7
치 과	29	15.2
한 방 과	8	4.2
약 제 과	1	0.5
기 타 ²⁾	6	3.3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3-3. 보건의료기관 종별 피신청인 참여율

(단위: 건, %)

보건의료 기관 구분	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타 ¹⁾
건수	191	25	39	45	4	5	5	38	25	4	1
비율	100.0	13.1	20.4	23.6	2.1	2.6	2.6	19.9	13.1	2.1	0.5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4. 진료과목별¹⁾ 피신청인 불참여사유

(단위: 건)

구 분	계	무과실 주장	참여의사 부재	당사자 합의
계	305	—	305	—
내 과	65	—	65	—
신 경 과	1	—	1	—
정신건강의학과	2	—	2	—
외 과	30	—	30	—
정형외과	57	—	57	—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구 분	계	무과실 주장	참여의사 부재	당사자 합의
신경외과	20	—	20	—
흉부외과	11	—	11	—
성형외과	9	—	9	—
마취통증의학과	4	—	4	—
산부인과	22	—	22	—
소아청소년과	9	—	9	—
안 과	6	—	6	—
이비인후과	10	—	10	—
피 부 과	4	—	4	—
비뇨기과	6	—	6	—
영상의학과	2	—	2	—
재활의학과	—	—	—	—
가정의학과	1	—	1	—
응급의학과	15	—	15	—
치 과	19	—	19	—
한 방 과	10	—	10	—
약 제 과	1	—	1	—
기 타 ²⁾	1	—	1	—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

3-5. 보건의료기관 종별 피신청인 불참여사유

(단위: 건)

보건의료 기관 불참여 사유	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타 ¹⁾
계	305	75	94	46	—	4	5	57	19	5	—
무과실 주장	—	—	—	—	—	—	—	—	—	—	—
참여의사 부재	305	75	94	46	—	4	5	57	19	5	—
당사자 합의	—	—	—	—	—	—	—	—	—	—	—

1)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6. 조정참여 결정 평균 소요기간

(단위: 일)

구분	피신청인 조정신청서 수령일	조정참여확인 의사 통보일	조정참여 결정 소요기간
평균기간	3.1	16.6	13.6

4. 의료사고 감정

1 의료사고 감정처리 현황

1-1. 의료사고 감정 총괄

(단위: 건)

구분	사건절차 개시 ¹⁾	처리 ²⁾
계	197	188
조정	191	182
중재	1	1
수탁	5	5

1) 신청된 사건 중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중재절차에 참여 동의한 건

2) 감정서 송부일 기준

〈그림〉 감정처리 건수 현황



1-2. 의료사고 감정처리 기간

(단위: 건, %)

구분	계	15일 이내	15~30일	31~60일	61~90일	90일 초과
조정	182 (100.0)	— (—)	5 (2.7)	165 (90.7)	12 (6.6)	— (—)
중재	1 (100.0)	— (—)	— (—)	— (—)	1 (100.0)	— (—)
수탁	5 (100.0)	— (—)	2 (40.0)	2 (40.0)	1 (20.0)	— (—)

※ ()은 비율을 나타냄.

※ 평균처리기간

1) 조정·중재: 52.9일

2) 수탁감정: 36일

2 세부 내역별 감정처리 현황

2-1. 진료과목별¹⁾ 감정처리

(단위: 건)

구분		사건절차 개시 ²⁾	처리 ³⁾
조정	계	191	182
	내과	41	44
	신경과	2	2
	정신건강의학과	2	2
	외과	12	10
	정형외과	28	29
	신경외과	12	11
	흉부외과	1	1
	성형외과	9	9
	마취통증의학과	3	2
	산부인과	13	12
	소아청소년과	5	6
	안과	2	2
	이비인후과	1	—
	피부과	3	2
	비뇨기과	1	1
	영상의학과	1	1
	재활의학과	—	—
	가정의학과	2	3
	응급의학과	9	9
	치과	29	27
	한방과	8	6
	약제과	1	1
	기타 ⁴⁾	6	2
중재	계	1	1
	응급의학과	1	1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2) 신청된 사건 중에서 피신청인이 절차에 참여 동의한 건, 접수시 기준

3) 감정서 송부일 기준

4)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2-2. 의료행위별 감정처리

2-2-1. 의료행위별(의과)

(단위: 건, %)

구분	계	진단	검사	투약	주사	수혈	처치	수술	마취	분만	내시경	건강검진	전원 ¹⁾	기타
건수	149	22	9	6	11	-	42	47	1	1	3	-	1	6
비율	100.0	14.8	6.0	4.0	7.4	-	28.2	31.5	0.7	0.7	2.0	-	0.7	4.0

1) 전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2-2-2. 의료행위별(치과)

(단위: 건, %)

구분	계	보철	임플란트	교정	의치	발치	보존	치주치료	기타
건수	27	8	2	1	-	10	4	2	-
비율	100.0	29.6	7.4	3.7	-	37.0	14.8	7.4	-

2-2-3. 의료행위별(한의과)

(단위: 건, %)

구분	계	한약	침	부항	뜸	신한방의료	물리치료	기타
건수	6	2	1	-	-	-	3	-
비율	100.0	33.3	16.7	-	-	-	50.0	-

2-2-4. 의료행위별(약학)

(단위: 건, %)

구분	계	조제	복약지도	기타
건수	1	1	-	-
비율	100.0	100.0	-	-

2-3. 의료기관 종별 감정처리

(단위: 건)

구분		사건절차 개시 ¹⁾	처리 ²⁾
조정	계	191	182
	상급종합병원	25	25
	종합병원	39	37
	병원	45	45
	치과병원	4	3
	한방병원	5	2
	요양병원	5	4
	의원	38	37
	치과의원	25	24
	한의원	4	4
중재	계	1	1
	종합병원	1	1

1) 신청된 사건 중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중재절차에 참여 동의한 건

2) 감정서 송부일 기준

3) 기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

세부 유형별 의료사고 내용

3-1. 진료과목별¹⁾

(단위: 건)

진료과목	의료사고	계	진단지연	오진	증상악화	효과미흡	감염	신경손상	감각이상	운동제한	부정(불)응답	약화사고	과민성반응	조영제부작용	출혈	장기손상	안전사고	악관절장애	치아파절	기타
조정	계	182	11	20	45	9	13	3	6	1	1	5	3	1	3	11	7	1	4	38
	내과	44	6	6	14	1	2	-	1	-	-	3	1	-	3	4	1	-	-	2
	신경과	2	-	-	1	-	-	-	-	-	-	-	-	-	-	-	1	-	-	-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진료 과목	의료 사고	계	진단 지연	오진	증상 악화	효과 미흡	감염	신경 손상	감각 이상	운동 제한	부정 불응 (아압)	약화 사고	과민 성반응	조영제 부작용	출혈	장기 손상	안전 사고	악관 절장애	치아 파절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2	-	-	1	-	-	-	-	-	-	-	-	-	-	-	1	-	-	-
외 과		10	-	-	2	-	2	1	-	-	-	-	-	1	-	2	1	-	-	1
정형외과		29	1	2	7	-	4	-	1	-	1	-	1	-	-	1	1	-	-	10
신경외과		11	1	2	3	2	1	-	1	-	-	-	-	-	-	-	-	-	-	1
흉부외과		1	-	-	1	-	-	-	-	-	-	-	-	-	-	-	-	-	-	-
성형외과		9	-	-	-	4	1	-	-	-	-	-	-	-	-	-	1	-	-	3
마취통증의학과		2	-	-	1	-	-	-	-	-	-	-	-	-	-	-	-	-	-	1
산부인과		12	1	1	2	1	1	-	-	-	-	-	-	-	-	3	-	-	-	3
소아청소년과		6	1	1	1	1	-	-	-	-	-	-	-	-	-	-	-	-	-	2
안 과		2	-	-	2	-	-	-	-	-	-	-	-	-	-	-	-	-	-	-
이비인후과		-	-	-	-	-	-	-	-	-	-	-	-	-	-	-	-	-	-	-
피 부 과		2	-	-	2	-	-	-	-	-	-	-	-	-	-	-	-	-	-	-
비뇨기과		1	-	-	-	-	-	-	-	-	-	-	-	-	-	1	-	-	-	-
영상의학과		1	-	-	-	-	-	-	-	-	-	-	-	-	-	-	-	-	-	1
재활의학과		-	-	-	-	-	-	-	-	-	-	-	-	-	-	-	-	-	-	-
가정의학과		3	-	-	-	-	-	-	-	-	-	-	-	-	-	-	1	-	1	1
응급의학과		9	1	4	1	-	-	-	-	1	-	-	1	-	-	-	-	-	-	1
치 과		27	-	2	6	-	2	1	3	-	-	-	-	-	-	-	-	1	3	9
한 방 과		6	-	1	1	-	-	-	-	-	-	1	-	-	-	-	-	-	-	3
약 학 과		1	-	-	-	-	-	-	-	-	-	1	-	-	-	-	-	-	-	-
기 타 ²⁾		2	-	1	-	-	-	1	-	-	-	-	-	-	-	-	-	-	-	-
계		1	-	-	-	-	1	-	-	-	-	-	-	-	-	-	-	-	-	-
중재 응급의학과		1	-	-	-	-	1	-	-	-	-	-	-	-	-	-	-	-	-	-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3-2. 환자 연령별

(단위: 건)

진료 과목	의료 사고	계	진단 지연	오진	증상 악화	효과 미흡	감염	신경 손상	감각 이상	운동 제한	부정 불응 (아압)	약화 사고	과민 성반응	조영제 부작용	출혈	장기 손상	안전 사고	악관 절장애	치아 파절	기타
계		183	11	20	45	9	14	3	6	1	1	5	3	1	3	11	7	1	4	38
조정 소계		182	11	20	45	9	13	3	6	1	1	5	3	1	3	11	7	1	4	38
0~9세		5	-	1	-	1	-	-	-	-	-	-	-	-	-	1	-	-	-	2
10~19세		8	1	-	3	-	-	-	-	1	-	1	-	-	-	-	-	-	-	2
20~29세		9	-	3	1	1	1	-	-	-	-	-	-	-	-	-	-	1	-	2
30~39세		21	3	2	5	-	2	-	-	-	1	-	1	-	1	-	1	-	-	5
40~49세		24	1	5	1	3	-	1	-	-	-	-	-	1	-	1	1	-	2	8
50~59세		32	1	5	8	1	4	1	4	-	-	-	1	-	-	1	-	-	-	6
60~69세		45	2	3	13	3	3	1	2	-	-	2	1	-	1	4	2	-	1	7
70~79세		23	2	-	7	-	3	-	-	-	-	2	-	-	1	3	1	-	1	3
80세 이상		9	1	1	4	-	-	-	-	-	-	-	-	-	-	1	2	-	-	-
미등록 ¹⁾		6	-	-	3	-	-	-	-	-	-	-	-	-	-	-	-	-	-	3
중재 소계		1	-	-	-	-	1	-	-	-	-	-	-	-	-	-	-	-	-	-
30~39세		1	-	-	-	-	1	-	-	-	-	-	-	-	-	-	-	-	-	-

1) 미등록: 보건의료기관, 외국인 포함

4

수탁감정 의뢰기관별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계	법원	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기타
접수	6	1	-	5	-	-
처리 ¹⁾	5	-	-	5	-	-

1) 처리 미포함 1건: 반려1건(법 시행일(2012. 4. 8) 이전 발생사건)

5. 조정 · 중재

1 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소계	조정 · 중재 절차개시									조정 · 중재 절차 불개시			참여 미확정
			중재 판정	취하	조정 하지 아니 하는 결정	합의 조서	조정결정			진행	소계	각 하 (불참)	취 하 (신청)		
							조정결정 계	성립	불성립					미확정	
계	503	192	1	20	12	92	65	37	28	－	2	311	305	6	－
조정	502	191	－	20	12	92	65	37	28	－	2	311	305	6	－
중재	1	1	1	－	－	－	－	－	－	－	－	－	－	－	－

2 사건 처리건수, 합의/결정금액, 처리기간

(단위: 건, 원, %, 일)

구분	계	통상절차 ¹⁾	신속절차 ²⁾
처리건수 (비율)	169 (100.0)	150 (88.8)	19 (11.2)
합의/결정금액 (건당 평균금액)	1,200,351,838 (7,102,674)	1,149,651,838 (7,664,346)	50,700,000 (2,668,421)
처리기간 (건당 평균처리기간)	13,568 (80)	12,305 (82)	1,263 (66)

1) 통상절차: 신속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는 통상의 절차

2) 신속절차: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조정부는 조정신청 사건 중 소액사건이나 과실이 명백한 사건 등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신속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신속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하면 1. 신청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2. 당사자가 사실관계 및 과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만 주로 다투는 사건, 3.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건, 4. 기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는 사건에 해당하면 조정부는 신속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3 감정서 송부 이후 종결까지 소요기간¹⁾

(단위: 건, %)

구분	계	15일 이내	16일~30일	31일~45일	46일~60일	60일 초과
계	183	38	79	52	11	3
조정	182	38	79	51	11	3
중재	1	—	—	1	—	—
비율	100.0	20.8	43.2	28.4	6.0	1.6

1) 감정부에서 감정처리한 사건 기준

4 합의조정 및 조정 성립금액

(단위: 원, %)

구분	금액	결정건수	비율	성립건수	비율
합의금액/ 조정 성립금액	계	157 ¹⁾	100.0	129	100.0
	50만원 미만	20	12.7	15	11.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2	14.0	19	14.7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8	43.3	58	45.0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	5.7	5	3.9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1	13.4	16	12.4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9	5.7	9	7.0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2	1.3	2	1.6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	3.8	5	3.9
	1억원 이상	—	—	—	—

1)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2건 제외

5 조정성립률¹⁾ 현황

5-1. 보건의료기관 종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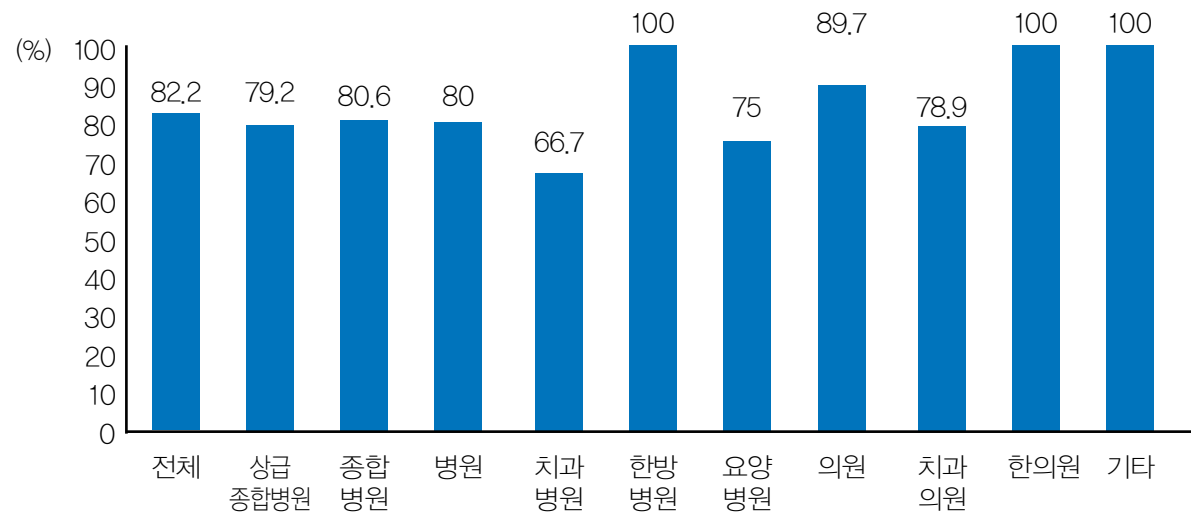
구 분	조정성립률	조정합의	조정결정	
			동의	부동의
계	82.2	92	37	28
상급종합병원	79.2	8	11	5
종합병원	80.6	16	9	6
병 원	80.0	23	9	8
치과병원	66.7	2	-	1
한방병원	100.0	2	1	-
요양병원	75.0	3	-	1
의 원	89.7	20	6	3
치과의원	78.9	15	-	4
한 의 원	100.0	2	1	-
기 타 ²⁾	100.0	1	-	-

1) 조정성립률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취하, 각하, 또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로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사건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나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사건의 비율을 말함.

- $\frac{(\text{조정합의건수} + \text{동의건수})}{(\text{조정합의건수} + \text{조정결정건수})} \times 100$

2) 기타 :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그림〉 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



5-2. 진료과목별¹⁾

(단위: 건, %)

구 분	조정성립률	조정합의	조정결정	
			동의	부동의
계	82.2	92	37	28
내 과	77.8	16	12	8
신 경 과	100.0	1	-	-
정신건강의학과	100.0	1	-	-
외 과	100.0	4	7	-
정형외과	81.8	9	9	4
신경외과	60.0	4	2	4
흉부외과	100.0	-	1	-
성형외과	62.5	5	-	3
마취통증의학과	66.7	1	1	1
산부인과	100.0	10	-	-
소아청소년과	100.0	4	-	-
안 과	100.0	2	-	-
이비인후과	-	-	-	-
피 부 과	100.0	2	-	-
비뇨기과	100.0	-	1	-
영상의학과	100.0	1	-	-
재활의학과	-	-	-	-
가정의학과	100.0	2	-	-
응급의학과	75.0	4	2	2
치 과	77.3	17	-	5
한 방 과	100.0	3	2	-
약 제 과	100.0	1	-	-
기 타 ²⁾	83.3	5	-	1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2) 기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5-3. 지역별

(단위: 건, %)

구 분	조정성립률	조정합의	조정결정	
			동의	부동의
계	82.2	92	37	28
서울	86.1	23	8	5
부산	88.9	5	3	1
인천	83.3	3	2	1
대구	100.0	2	3	—
광주	83.3	5	—	1
대전	60.0	2	1	2
울산	100.0	2	—	—
경기	84.4	28	10	7
강원	100.0	2	—	—
충북	77.8	4	3	2
충남	75.0	4	2	2
전북	—	—	—	—
전남	66.7	1	1	1
경북	66.7	2	2	2
경남	73.3	9	2	4
제주	—	—	—	—
세종	—	—	—	—



부 록

1. 의료기관 종류별 정의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안내

1. 의료기관 종류별 정의

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함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4호).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의료법」 제3조 제1항)

상급종합병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종합병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

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의료법」 제3조의3 제1항)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의료법」 제3조의2)

치과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의료법」 제3조의2)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의료법」 제3조의2)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의료법」 제3조의2)

의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한의원

한의학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약국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함.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함(약사법 제2조 제3호)

보건기관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소의 지소)와 의료취약지구로서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되며 관할 인구의 2/3 이상이 교통시간 30분 이내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지역보건법 제8조 내지 제10조)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안내

감사

감사팀

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등 감사에 관한 사항

 (02)6210-0109

전략기획부

사업지원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02)6210-0192

전략기획팀

기관운영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경영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02)6210-0152

교육홍보팀

직원교육 및 대외교육,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02)6210-0161

대불심사팀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 및 접수, 심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02)6210-0182

의료사고예방연구팀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02)6210-0172

경영지원부

예산회계팀

예산, 재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

 (02)6210-0122

인사총무팀

직원 채용, 인사, 평가, 복무, 복리후생, 노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구매, 계약, 시설물 관리, 보안 등에 관한 사항,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02)6210-0132

정보화전략팀

정보화 사업 계획, 관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02)6210-0111

접수상담팀

상담 및 고객만족도 제고,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신청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02)6210-0051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분쟁 신청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항
- 당사자 제출자료 심사, 피신청인 동의여부 확인, 자료분석, 신청사건 관리, 제척 및 기피결정, 조정기일 지정, 당사자 합의에 관한 사항
-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조정결정서 작성, 당사자 합의유도,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02)6210-0328

의료사고 감정단

- 의료사고감정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분쟁 신청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 임명 ·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조사보고서 작성, 감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02)6210-0226



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2

2013년 8월 발행

발 행 인 : 추 호 경

발 행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편 집 : 의료사고예방연구팀

전 화 : 02-6210-0130, 0172

인 쇄 : 주)문영사(02-504-2275)

홈 페이지 : www.k-medi.or.kr

※ 이 책의 판권, 저작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소유이므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